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전번호 2012 - 70 - 303호 (사건번호 : 201212조사016)

안 건 명 (주)KT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석채

의결연월일 2012. 12. 24.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ii) 이통3사 유통망에서 가입조건으로 지급하는 대납, 단말기 할인,페이백 등을 전산에 정확히 기재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관련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시 수시 제출하고, (iv) 관련 전산자료 검증 시 허위 입력 등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v) 신규모집 금지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vi) 온라인상에서의 불·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제재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2013.2.22~3.13(20일) 기간 동안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MVNO사업자의 신규가입은 제외),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을 포함한다.

7.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2,8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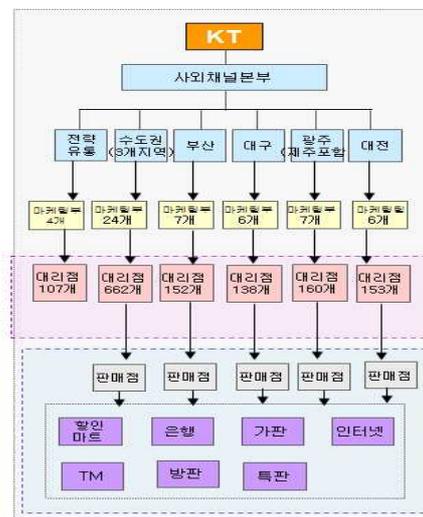
가. 단말기 보조금 개요

(1) 단말기 유통구조

이통 3사는 모두 수도권/경북/경남/호남/충청 단위로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본부 산하 마케팅팀이 대리점(직영점 포함, 이하 같음)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대리점 또는 대리점과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개통과 동시에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통 3사 유통망 현황 비교 >

| 구분 | 피십인 |
|-----|---|
| 본부 | 8마케팅본부 1마케팅단 : 수도권강남/강북/서부, 부산,대구,전남,충남,제주,전략유통 |
| 지점 | ○○개 |
| 대리점 | ○○○○개(직영점 포함) |
| 판매점 | 약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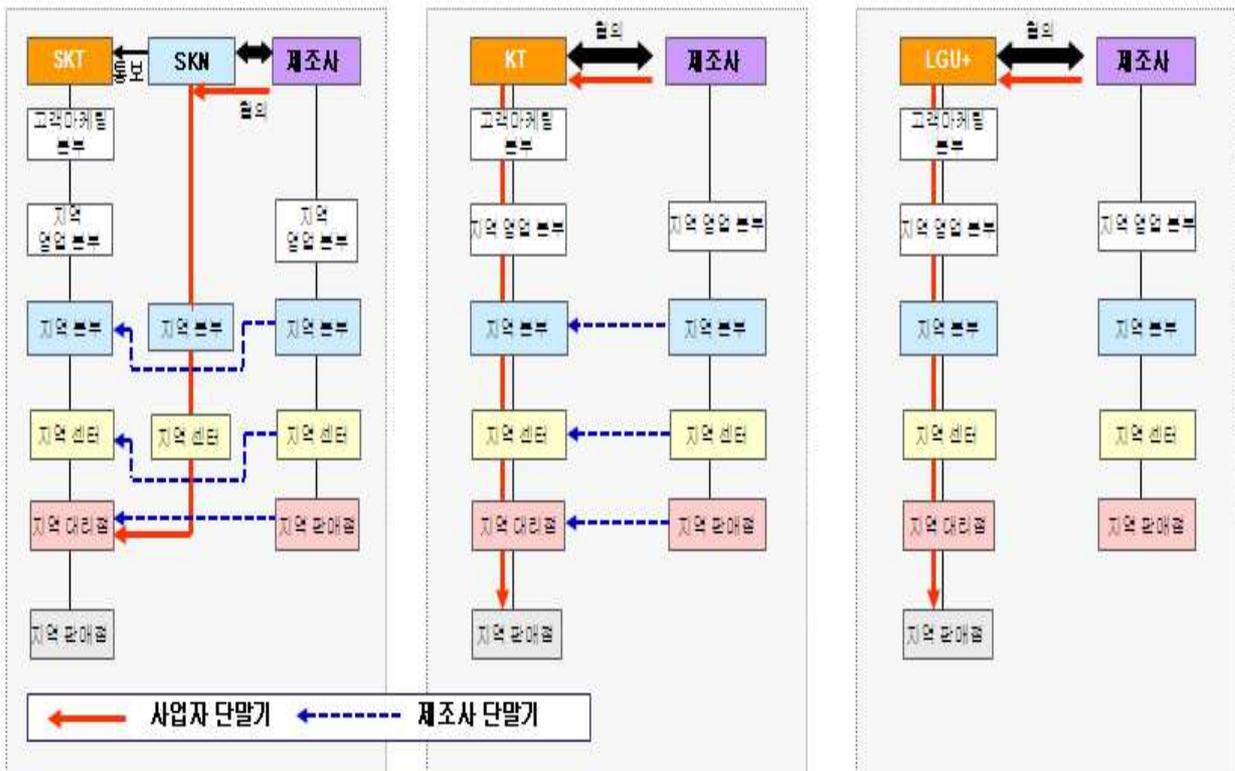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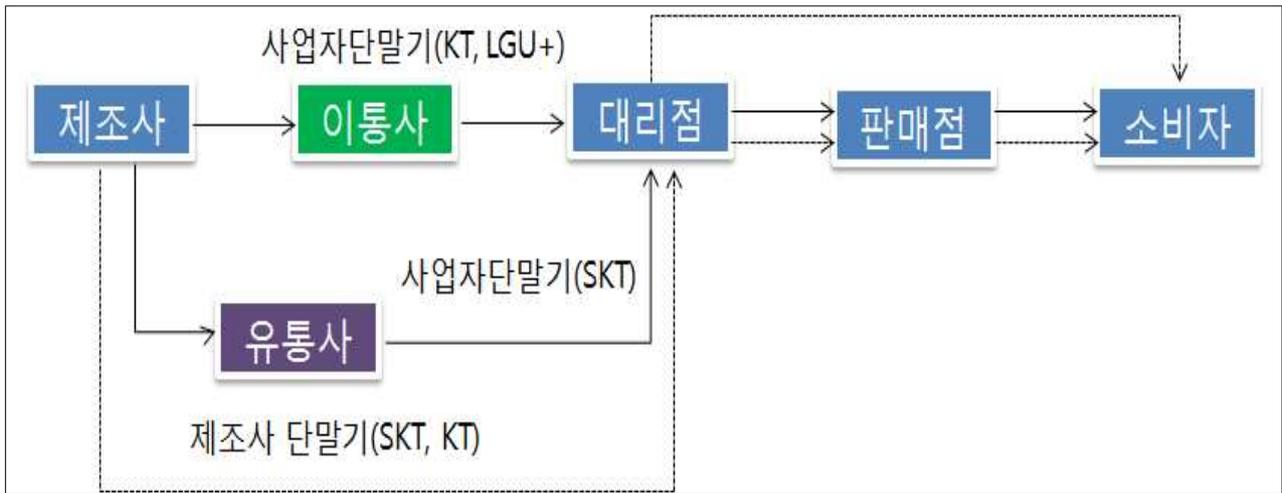


주: 소매-대리점 직접판매/도매-대리점판매를 제외한 모든 판매(판매점,가판,인터넷판매 등)
 자료: 사업자 제출자료(2012년 11월 말 기준)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12.11월 기준)

피싱인의 경우 제조사와 직접 모델사양·출고가·출고량 등을 협의하여 단말기를 유통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체계로, 제조사와의 협의를 거쳐 단말기를 구매한 후 대리점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사와 대리점간의 별도 협의를 통해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도 있다.

< 이통 3사 단말기 유통구조 비교 >



※ 사업자 제출자료('12.11월 기준)

[2] 단말기 보조금의 정의

단말기 보조금이란 ① 이통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과 ②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출고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약정의 보조금”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단말기와 연계되어 있어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기종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보다 특정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므로 단말기 보조금이 주로 가입자 유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유선전화·초고속 인터넷 등 단말기가 표준화된 시장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 대신 현금·사은품 등 경품이 활용되는 경향도 있다.

약정 보조금은 약정기간(12~24개월)·지급시기(일시/월별 분할) 또는 단말기에 따라 2~14만원(피싱인 기준)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보고서상 “통신 단말장치 구입 지원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 이통 3사 이용약관상 약정 보조금 관련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보조금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사업자간 개별계약에 따름 ○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음 |
| 약정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 설정 |
| 위약금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위약금 납부 <p>※ 위약금=약정금액×{(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p> |

〈 피싱인의 약정 보조금 종류 〉

- ① 쇼킹스폰서 기본형 : KT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약정기간에 따라 가입시 단말기 가격을 일괄 할인해 주는 제도
- ② 쇼킹스폰서 골드형 : KT 가입자 번호이동/신규/기기변경 가입자 중 월 사용요금이 많은 고객이 할부로 개통할 경우 할부유지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

약정의 보조금¹⁾은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수수료 등을 전용하여 지급되고, 이들 재원은 영업보고서상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제외)” 및 “가입자관리비용”으로 분류된다.

(3) 약정의 보조금의 재원

약정의 보조금의 재원은 ①판매 장려금(이통사→대리점), ②약정 수수료(이통사→대리점) 및 ③제조사 장려금(제조사→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 장려금은 이통사가 영업 정책²⁾에서 정한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rebate)로서, 재고물량 소진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특정 단말기(비인기 단말기 또는 인기·최신 단말기)를 전략 단말기로 설정하여 더 많은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략 단말기 정책”이다.

1) 약정외 보조금의 세부 지급유형으로는 단말기 판매시 즉석에서 저가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할인판매”, 가입비·채권 보전료·충전기 비용 등을 면제해 주는 “가입비 면제”, 출고가로 판매하되 그 차액을 가입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환불(Payback)” 등이 있고, 할인판매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2) 영업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매월 수회~수십회 배포되고, 본사→지역본부→대리점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별 정책이 가미될 수 있음

< 전략 단말기 정책 예시 >

| 도매채널 정책 | | 9월 공통 유.무선 정책 | | | | 對外秘 | | | |
|-------------------|------------|---|-------|-------|--------|-----------------------|-------|-------|--|
| 구분 | 채널구분 | 채널 정의 | | | | 채널정합 | | | |
| 적용 채널 | 도매 채널 | 도매 채널 / 스마트에이전트 독립형 개통 (즉, 소매.온라인.CRM을 제외한 채널 개통) | | | | 쇼노트 | | | |
| 금액 표기 단위 | | 천원/VAT포함 | | | | | | | |
| KD-1. 도매 SPOT 정책1 | | | | | | 9.1~ | | | |
| ~가입 유형 | | 약정/할부 기간 | | 운영 대상 | | LTE 스폰서 24개월 이상 할부 조건 | | | |
| 기본 결합 | 골드 LTE 스폰서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010 신규 | MNP 신규 | 기변 | | |
| | | ● | ● | ● | ● | ● | ● | | |
| 도매 | KT | | | | 제조사 | | | | |
| | 010 | S-MNP | L-MNP | 기변/전환 | 010 | S-MNP | L-MNP | 기변/전환 | |
| SHV-E250K(G) | 40 | 40 | 40 | 0 | 0 | 0 | 0 | 0 | |
| E250K(G)_64G | 40 | 40 | 40 | 0 | 0 | 0 | 0 | 0 | |
| SHV-E210K(W) | 50 | 50 | 50 | 50 | 30 | 30 | 30 | 30 | |
| E210K(W)_16G | 50 | 50 | 50 | 50 | 30 | 30 | 30 | 30 | |
| SHV-E160K(W) | 50 | 50 | 50 | 50 | 40 | 40 | 40 | 40 | |
| E160K(W)_16G | 50 | 50 | 50 | 50 | 40 | 40 | 40 | 40 | |
| SHV-E120K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
| SHV-E170K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
| IM-A850K | 30 | 30 | 30 | 30 | 40 | 40 | 40 | 40 | |
| IM-A830K | 30 | 30 | 30 | 30 | 40 | 40 | 40 | 40 | |
| IM-A810K | 50 | 50 | 50 | 50 | 0 | 0 | 0 | 0 | |
| LG-F200K | 40 | 40 | 40 | 40 | 50 | 50 | 50 | 50 | |
| LG-F180K | 40 | 40 | 40 | 40 | 50 | 50 | 50 | 50 | |
| LG-F160K | 70 | 70 | 70 | 70 | 90 | 90 | 90 | 90 | |
| LG-F120K | 50 | 50 | 50 | 50 | 70 | 70 | 70 | 70 | |
| KM-E100 | 50 | 50 | 50 | 50 | 0 | 0 | 0 | 0 | |

약정 수수료는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실적 또는 위탁 업무의 처리 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서비스 개통시 지급되는 “개통 수수료”나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자 모집시 해당 가입자의 월 요금 수납액의 7.15%를 36~60개월간 지급받게 되는 “가입고객관리수수료”가 대표적이다.

< 약정 수수료 종류(피심인) >

| 구분 | 개통 수수료 | 가입고객관리수수료 | 단말기 기변 수수료 | 기타 수수료(예시) |
|-------|--------|-----------------------------|-----------------------------|---|
| 조건·금액 | 없음 | 월 요금 수납액의 약 7.15% (60개월 지급) | 월 요금 수납액의 약 7.15% (36개월 지급) | 요금수납 수수료 : 건당 1,000원 자동이체 수수료 : 1,650원 |

제조사 장려금은 제조사가 대리점에 “단말기”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리베이트로서, 협의 주체에 따라 “기본정책”(제조사 본사-이통사 본사)·“계약대리점 정책”(제조사-특정 대리점)으로, 제공 방식3)에 따라 종량제·정액제로 구분된다.

3) (종량제) 0~10건 : 건당 2만원 / 11~100건 : 건당 3만원, (정액제) 100건 이상 500만원

대리점은 이러한 재원 및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판매가를 “단가표” 형식으로 판매점에 배포하며, 판매점은 고객과 흥정하여 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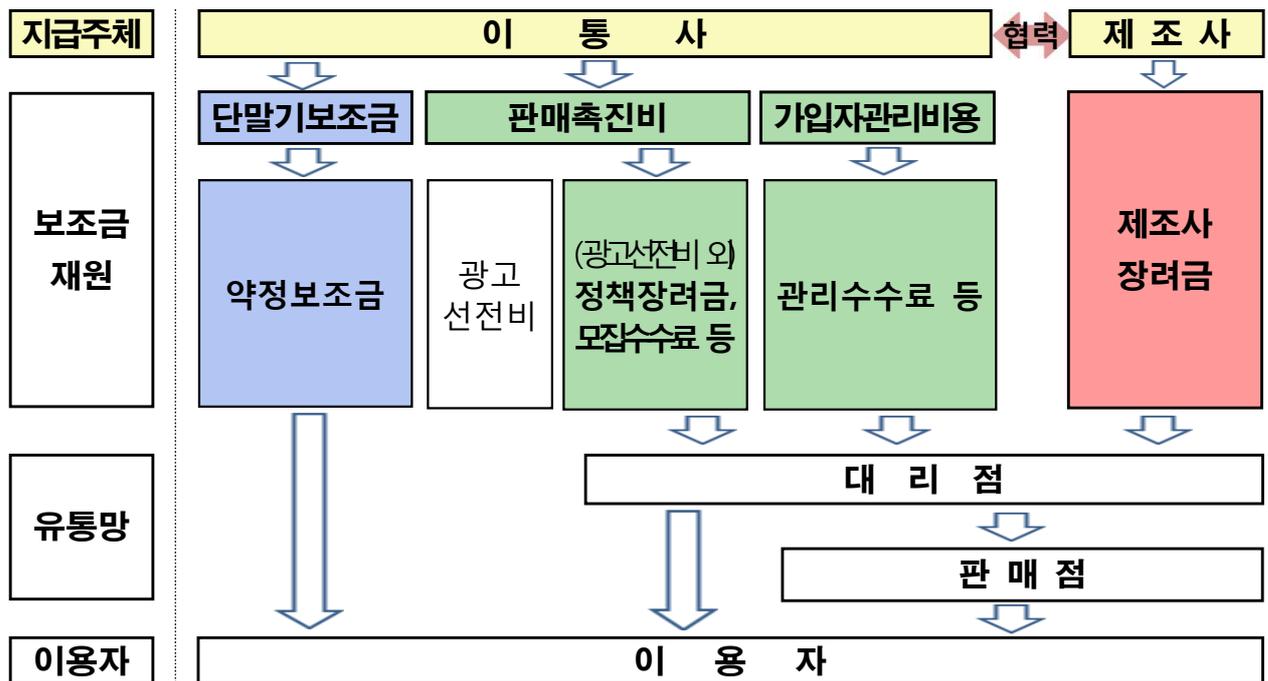
< 대리점 단가표(예시) >

| KT 의무약정 | | ☆010 면제/ ★MNP 면제 | | 의무약정 신규(24개월기준) | | 전환신규 현금 | 보상 (변 (24개 |
|---------|--------------|------------------|---------|-----------------|---------|------------|------------------|
| 제조사 | 모델명 | 닉네임 | 출고가 | 010신규 | MNP | | |
| 삼성 | SHW-A130K ☆★ | 와이파이폰(FMC) | 455,400 | 0 | 0 | 0 | |
| 삼성 | SHW-A250K ☆★ | 미니멀터치 | 330,000 | 0 | 0 | 0 | |
| 삼성 | SHW-A220K ☆★ | 노리폰(FMC) | 399,300 | 0 | 0 | 0 | |
| 삼성 | SHW-A200K | 노리F | 599,500 | 180,000 | 180,000 | 120,000 | |
| 삼성 | SHW-A170K ☆★ | 코비N(FMC) | 594,000 | 0 | 0 | 200,000 | |
| 팬택 | IM-A630K | 이자르폰 | 605,000 | 0 | 0 | 0 | |
| 팬택 | IM-U660K ☆★ | 골드루키(FMC) | 539,000 | 0 | 0 | 0 | |
| 팬택 | IM-S610K ☆★ | 체크메이드 | 473,000 | 0 | 0 | 0 | |
| 팬택 | IM-A710K | 베가X | 885,500 | 520,000 | 520,000 | 484,000 | |

■ 약정 공지사항

- FMC모델의 경우 Voip 필수유치(FMC모델 : 모델 닉네임 옆 표시함) → 130K,170K,220K,KH3900,KU3800,660K
- 1년약정의 경우 약정보조금(위약금) = 5만원
- 1년약정 공짜 + 가입비면제 모델: KH3900, KU4000, KU3800,A130K, 660K, 610K - 6모델 (2년약정으로도 개통 가능)
- 이자르폰, 옵티머스원,레전드폰, 베가X, 테이크 할부(스마트폰서) 개통 시 W9000 무약정 지급(스마트폰서 요금제무관 / M
- KU3700(옵티머스 원), A630K(이자르) : 신규 현금가 0원! / 기변 현금가는 3만원! / 데이터 필수유치 아님!

< 단말기 보조금 財源 및 보조금 창출경로 >



※ KT 및 LGU+는 영업보고서상 판매촉진비에 제조사 장려금 중 “기본정책 장려금”이 포함

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1)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관련 조항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관련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2회(‘10년, ‘11년)에 걸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⁴⁾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⁵⁾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⁶⁾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으며,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부과하였다.

4)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5)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6)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다. 이동전화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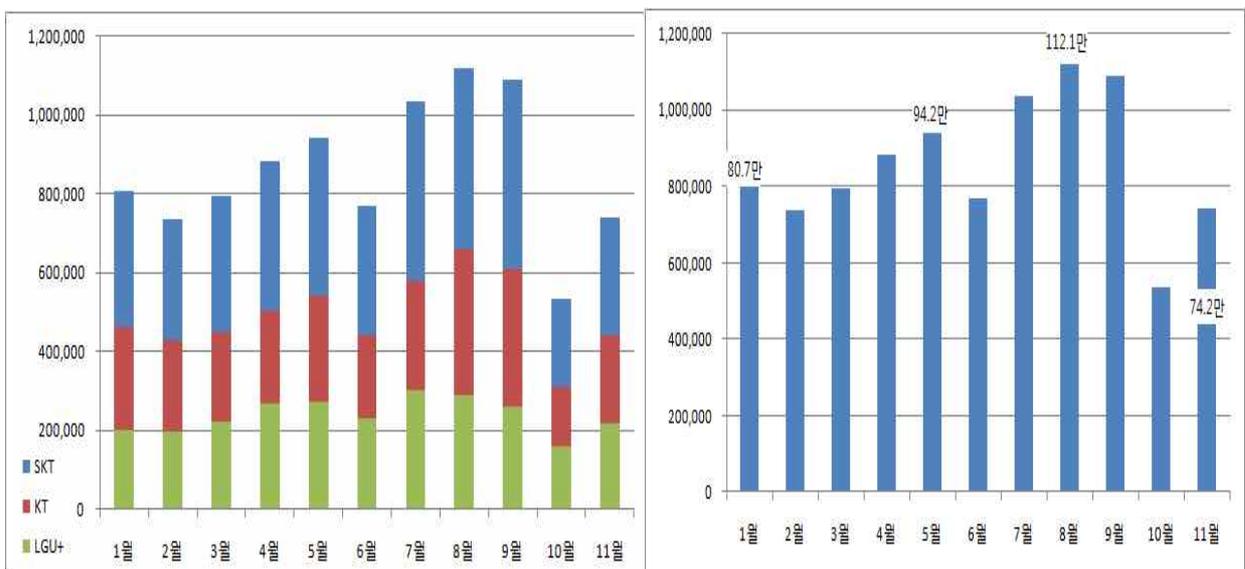
(1)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12.1월~11월말 이동전화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는, ‘12년 1월 80.7만건에서 5월 94.2만건으로 증가한 이후 6월 76.9만건으로 하락하였으나 7~9월까지 평균 108만건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 '12.1.1 ~ 11.30일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월별) 〉

(단위 : 건)

| | SKT | KT | LGU+ | 합계 |
|-----|---------|---------|---------|-----------|
| 1월 | 344,176 | 259,419 | 202,917 | 806,512 |
| 2월 | 307,627 | 230,314 | 199,181 | 737,122 |
| 3월 | 345,458 | 223,598 | 224,369 | 793,425 |
| 4월 | 380,393 | 235,420 | 267,173 | 882,986 |
| 5월 | 399,178 | 271,478 | 271,341 | 941,997 |
| 6월 | 328,020 | 209,529 | 231,005 | 768,554 |
| 7월 | 454,918 | 280,094 | 300,402 | 1,035,414 |
| 8월 | 460,804 | 368,673 | 291,649 | 1,121,126 |
| 9월 | 479,281 | 347,615 | 261,546 | 1,088,442 |
| 10월 | 222,229 | 153,884 | 158,585 | 534,698 |
| 11월 | 301,747 | 221,442 | 219,058 | 742,247 |



특히, 조사대상기간을 보면 7월1주(2~8일) 25.3만건에서 7월2주(9~15일) 36.3만건으로 43.6% 증가하였고, 7월4주(9.8만건) 63.5% 감소하였다가 8월4주 이후 급격한 증가한 이후 9월1주 66.4% 감소한 15.5만건에서 9월2주 68.7만건으로 343.7%가 증가하였다. 이는 갤럭시 S3(7.9일 출시)의 판매가격이 온라인에서 17만원에 팔리는 시기로 사업자간 번호이동 과열이 최고점에 달한 시기이다.

< '12년 주요 신규 단말기 출시현황 >

| 구 분 | 12.5월 | 12.7월 | 12.9월 |
|--------------|--------------------------------------|--|--|
| 단말명 (모델명) | 옵티머스 LTE II (LG-F160) 935,000원 | 갤럭시S III LTE 32G (SHV-E210 32G) 994,400원 | 갤럭시S III LTE 16G (SHV-E210 16G) 961,400원 |
| | 갤럭시 R스타일 (SHV-E170) 799,700원 | 베가 R 5 (IM-A840) 955,900원 | 갤럭시노트 II 16G (SHV-E250 16G) 1,089,000원 |
| 출고가 | 베가레이저 II (IM-A830) 913,000원 | - | 옵티머스 G (LG-F180) 999,900원 |
| | - | - | 옵티머스 Vu II (LG-F200) 966,900원 |

< '12.1.1~11.30일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주별)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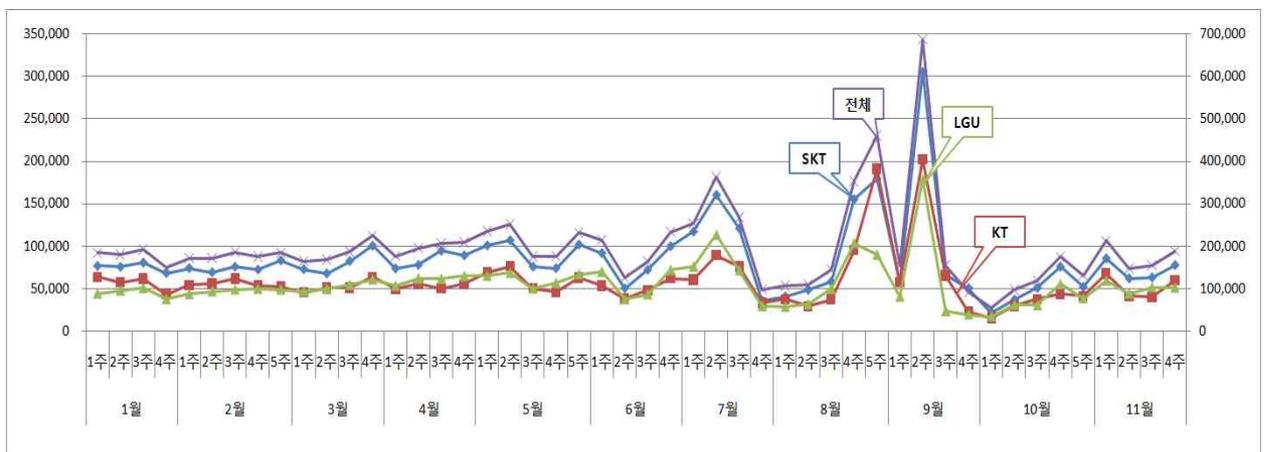
| | 1월1주 | 1월2주 | 1월3주 | 1월4주 | 2월1주 | 2월2주 | 2월3주 | 2월4주 | 2월5주 |
|-------|---------|---------|---------|---------|---------|---------|---------|---------|---------|
| S K T | 76,494 | 75,341 | 80,472 | 68,116 | 73,980 | 69,128 | 75,580 | 72,205 | 83,022 |
| K T | 63,609 | 57,216 | 61,485 | 43,025 | 54,011 | 55,570 | 61,482 | 53,733 | 52,199 |
| LGU+ | 44,019 | 47,376 | 50,342 | 37,263 | 43,284 | 46,713 | 48,573 | 49,582 | 48,658 |
| 계 | 184,122 | 179,933 | 192,299 | 148,404 | 171,275 | 171,411 | 185,635 | 175,520 | 183,879 |

| | 3월1주 | 3월2주 | 3월3주 | 3월4주 | 4월1주 | 4월2주 | 4월3주 | 4월4주 | 5월1주 |
|-------|---------|---------|---------|---------|---------|---------|---------|---------|---------|
| S K T | 72,633 | 67,545 | 82,354 | 100,391 | 73,575 | 77,775 | 94,475 | 89,003 | 100,713 |
| K T | 45,421 | 51,256 | 50,919 | 63,405 | 49,490 | 55,271 | 50,286 | 55,264 | 69,073 |
| LGU+ | 46,478 | 49,255 | 54,213 | 60,711 | 53,041 | 61,955 | 61,323 | 64,590 | 65,099 |
| 계 | 164,532 | 168,056 | 187,486 | 224,507 | 176,106 | 195,001 | 206,084 | 208,857 | 234,885 |

| | 5월2주 | 5월3주 | 5월4주 | 5월5주 | 6월1주 | 6월2주 | 6월3주 | 6월4주 | 7월1주 |
|-------|---------|---------|---------|---------|---------|---------|---------|---------|---------|
| S K T | 106,900 | 75,617 | 73,890 | 101,843 | 91,650 | 50,276 | 71,959 | 99,915 | 117,098 |
| K T | 76,353 | 50,253 | 46,169 | 62,910 | 53,356 | 37,804 | 48,150 | 62,048 | 60,276 |
| LGU+ | 68,427 | 49,956 | 56,477 | 66,940 | 69,673 | 37,239 | 43,092 | 71,707 | 75,717 |
| 계 | 251,680 | 175,826 | 176,536 | 231,693 | 214,679 | 125,319 | 163,201 | 233,670 | 253,091 |

| | 7월2주 | 7월3주 | 7월4주 | 8월1주 | 8월2주 | 8월3주 | 8월4주 | 8월5주 | 9월1주 | 9월2주 | 9월3주 |
|-------|---------|---------|--------|---------|---------|---------|---------|---------|---------|---------|---------|
| S K T | 160,479 | 120,764 | 35,596 | 40,477 | 48,311 | 57,994 | 155,219 | 179,784 | 57,057 | 305,903 | 66,148 |
| K T | 89,429 | 75,693 | 33,107 | 37,461 | 29,285 | 36,892 | 95,392 | 191,232 | 57,295 | 202,282 | 65,266 |
| LGU+ | 113,426 | 71,425 | 28,970 | 28,403 | 31,387 | 49,420 | 103,456 | 89,847 | 40,489 | 178,800 | 23,184 |
| 계 | 363,334 | 267,882 | 97,673 | 106,341 | 108,983 | 144,306 | 354,067 | 460,863 | 154,841 | 686,985 | 154,598 |

| | 9월4주 | 10월1주 | 10월2주 | 10월3주 | 10월4주 | 10월5주 | 11월1주 | 11월2주 | 11월3주 | 11월4주 | 평균 |
|------|--------|--------|--------|---------|---------|---------|---------|---------|---------|---------|---------|
| SKT | 50,173 | 21,656 | 36,792 | 50,608 | 75,704 | 51,615 | 85,427 | 61,797 | 62,888 | 77,489 | 83,830 |
| K T | 22,772 | 15,250 | 29,563 | 37,401 | 43,674 | 41,106 | 67,554 | 40,838 | 40,268 | 59,672 | 58,364 |
| LGU+ | 19,073 | 16,946 | 30,668 | 30,195 | 55,329 | 38,413 | 59,494 | 44,280 | 51,375 | 50,943 | 54,734 |
| 계 | 92,018 | 53,852 | 97,023 | 118,204 | 174,707 | 131,134 | 212,475 | 146,915 | 154,531 | 188,104 | 196,928 |



'12.11월말 기준 번호이동 일평균수는 SKT가 12천건으로 가장 높았고, KT는 8.3천건, LGU+는 7.8천건을 나타내, 번호이동 가입자의 일평균수는 28.1천건을 기록하였다.

〈 '12.1.1 ~ 11.30일 가입자수 일평균 추이(주별) 〉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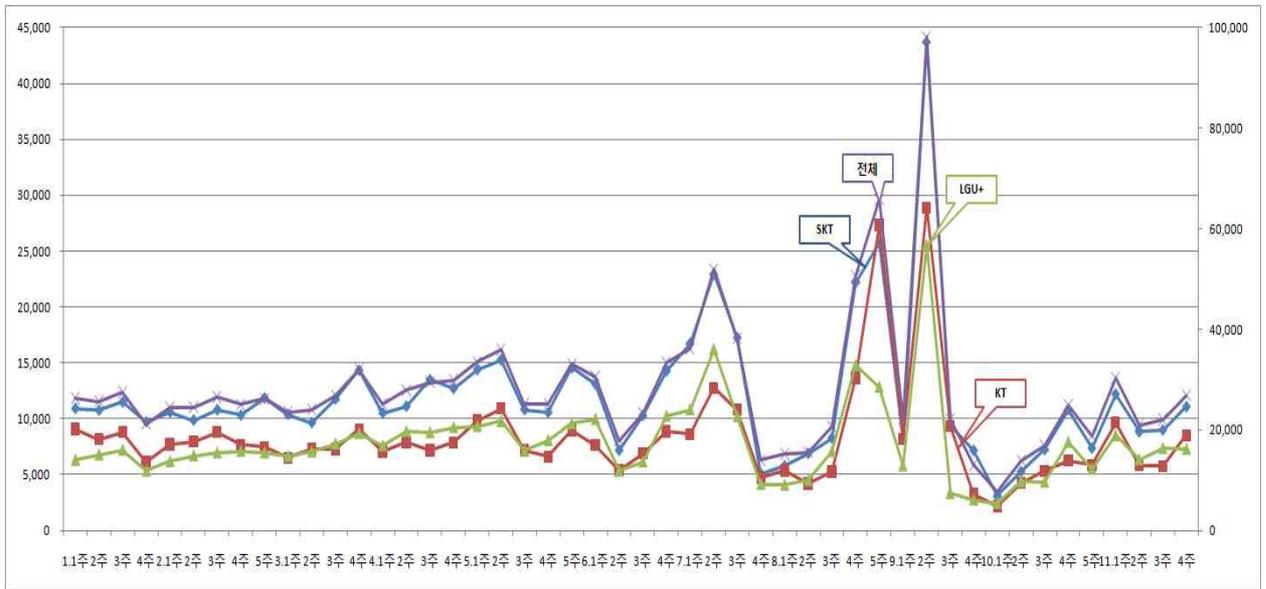
| | 1월1주 | 1월2주 | 1월3주 | 1월4주 | 2월1주 | 2월2주 | 2월3주 | 2월4주 | 2월5주 |
|-------|--------|--------|--------|--------|--------|--------|--------|--------|--------|
| S K T | 10,928 | 10,763 | 11,496 | 9,731 | 10,569 | 9,875 | 10,797 | 10,315 | 11,860 |
| K T | 9,087 | 8,174 | 8,784 | 6,146 | 7,716 | 7,939 | 8,783 | 7,676 | 7,457 |
| LGU+ | 6,288 | 6,768 | 7,192 | 5,323 | 6,183 | 6,673 | 6,939 | 7,083 | 6,951 |
| 계 | 26,303 | 25,705 | 27,471 | 21,201 | 24,468 | 24,487 | 26,519 | 25,074 | 26,268 |

| | 3월1주 | 3월2주 | 3월3주 | 3월4주 | 4월1주 | 4월2주 | 4월3주 | 4월4주 | 5월1주 |
|-------|--------|--------|--------|--------|--------|--------|--------|--------|--------|
| S K T | 10,376 | 9,649 | 11,765 | 14,342 | 10,511 | 11,111 | 13,496 | 12,715 | 14,388 |
| K T | 6,489 | 7,322 | 7,274 | 9,058 | 7,070 | 7,896 | 7,184 | 7,895 | 9,868 |
| LGU+ | 6,640 | 7,036 | 7,745 | 8,673 | 7,577 | 8,851 | 8,760 | 9,227 | 9,300 |
| 계 | 23,505 | 24,008 | 26,784 | 32,072 | 25,158 | 27,857 | 29,441 | 29,837 | 33,555 |

| | 5월2주 | 5월3주 | 5월4주 | 5월5주 | 6월1주 | 6월2주 | 6월3주 | 6월4주 | 7월1주 |
|-------|--------|--------|--------|--------|--------|--------|--------|--------|--------|
| S K T | 15,271 | 10,802 | 10,556 | 14,549 | 13,093 | 7,182 | 10,280 | 14,274 | 16,728 |
| K T | 10,908 | 7,179 | 6,596 | 8,987 | 7,622 | 5,401 | 6,879 | 8,864 | 8,611 |
| LGU+ | 9,775 | 7,137 | 8,068 | 9,563 | 9,953 | 5,320 | 6,156 | 10,244 | 10,817 |
| 계 | 35,954 | 25,118 | 25,219 | 33,099 | 30,668 | 17,903 | 23,314 | 33,381 | 36,156 |

| | 7월2주 | 7월3주 | 7월4주 | 8월1주 | 8월2주 | 8월3주 | 8월4주 | 8월5주 | 9월1주 | 9월2주 | 9월3주 |
|-------|--------|--------|--------|--------|--------|--------|--------|--------|--------|--------|--------|
| S K T | 22,926 | 17,252 | 5,085 | 5,782 | 6,902 | 8,285 | 22,174 | 25,683 | 8,151 | 43,700 | 9,450 |
| K T | 12,776 | 10,813 | 4,730 | 5,352 | 4,184 | 5,270 | 13,627 | 27,319 | 8,185 | 28,897 | 9,324 |
| LGU+ | 16,204 | 10,204 | 4,139 | 4,058 | 4,484 | 7,060 | 14,779 | 12,835 | 5,784 | 25,543 | 3,312 |
| 계 | 51,905 | 38,269 | 13,953 | 15,192 | 15,569 | 20,615 | 50,581 | 65,838 | 22,120 | 98,141 | 22,085 |

| | 9월4주 | 10월1주 | 10월2주 | 10월3주 | 10월4주 | 10월5주 | 11월1주 | 11월2주 | 11월3주 | 11월4주 | 평균 |
|-------|--------|-------|--------|--------|--------|--------|--------|--------|--------|--------|--------|
| S K T | 7,168 | 3,094 | 5,256 | 7,230 | 10,815 | 7,374 | 12,204 | 8,828 | 8,984 | 11,070 | 11,976 |
| K T | 3,253 | 2,179 | 4,223 | 5,343 | 6,239 | 5,872 | 9,651 | 5,834 | 5,753 | 8,525 | 8,338 |
| LGU+ | 2,725 | 2,421 | 4,381 | 4,314 | 7,904 | 5,488 | 8,499 | 6,326 | 7,339 | 7,278 | 7,819 |
| 계 | 13,145 | 7,693 | 13,860 | 16,886 | 24,958 | 18,733 | 30,354 | 20,988 | 22,076 | 26,872 | 28,133 |



한편, '12년도 번호이동 순증은 LGU+가 47.9만건으로 순증을 기록한 반면, KT는 46.3만건, SKT는 1.6만건의 순감을 기록하였다.

〈 '12.1.1 ~ 11.30일 번호이동 순증규모 추이(주별) 〉

(단위 : 건)

| | 1월1주 | 1월2주 | 1월3주 | 1월4주 | 2월1주 | 2월2주 | 2월3주 | 2월4주 |
|-------|--------|--------|--------|---------|--------|--------|--------|--------|
| S K T | -1,719 | -505 | -1,156 | 9,865 | 4,912 | -3,004 | -3,603 | -1,538 |
| K T | 205 | -5,228 | -6,081 | -12,826 | -7,619 | -4,999 | -2,740 | -8,256 |
| LGU+ | 1,514 | 5,733 | 7,237 | 2,961 | 2,707 | 8,003 | 6,343 | 9,794 |
| 순증1위 | LGU+ | LGU+ | LGU+ | S K T | S K T | LGU+ | LGU+ | LGU+ |
| 순증3위 | S K T | K T | K T | K T | K T | K T | S K T | K T |

| | 2월5주 | 3월1주 | 3월2주 | 3월3주 | 3월4주 | 4월1주 | 4월2주 | 4월3주 |
|-------|---------|---------|--------|---------|---------|---------|---------|---------|
| S K T | 10,157 | 5,938 | -4,322 | 5,288 | 7,310 | -2,279 | -6,571 | 15,384 |
| K T | -15,686 | -15,288 | -8,615 | -17,013 | -16,985 | -13,492 | -15,978 | -30,957 |
| LGU+ | 5,529 | 9,350 | 12,937 | 11,725 | 9,675 | 15,771 | 22,549 | 15,573 |
| 순증1위 | S K T | LGU+ | LGU+ | LGU+ | LGU+ | LGU+ | LGU+ | LGU+ |
| 순증3위 | K T | K T | K T | K T | K T | K T | K T | K T |

| | 4월4주 | 5월1주 | 5월2주 | 5월3주 | 5월4주 | 5월5주 | 6월1주 | 6월2주 |
|-------|---------|---------|---------|---------|---------|---------|---------|--------|
| S K T | 2,126 | 439 | -1,745 | 1,901 | -1,358 | 2,062 | -1,547 | -1,839 |
| K T | -21,596 | -14,064 | -10,755 | -11,520 | -15,185 | -15,914 | -20,361 | -5,701 |
| LGU+ | 19,470 | 13,625 | 12,500 | 9,619 | 16,543 | 13,852 | 21,908 | 7,540 |
| 순증1위 | LGU+ | LGU+ |
| 순증3위 | K T | K T | K T | K T | K T | K T | K T | K T |

| | 6월3주 | 6월4주 | 7월1주 | 7월2주 | 7월3주 | 7월4주 | 8월1주 | 8월2주 |
|-------|--------|---------|---------|---------|---------|--------|--------|--------|
| S K T | 4,599 | 651 | 12,740 | 3,015 | 5,606 | -8,478 | -2,235 | 5,741 |
| K T | -5,318 | -14,652 | -26,903 | -33,318 | -20,135 | 3,639 | 5,380 | -9,931 |
| LGU+ | 719 | 14,001 | 14,163 | 30,303 | 14,529 | 4,839 | -3,145 | 4,190 |
| 순증1위 | S K T | LGU+ | LGU+ | LGU+ | LGU+ | LGU+ | K T | S K T |
| 순증3위 | K T | K T | K T | K T | K T | S K T | LG U + | K T |

| | 8월3주 | 8월4주 | 8월5주 | 9월1주 | 9월2주 | 9월3주 | 9월4주 | 10월1주 |
|-------|---------|---------|---------|---------|---------|--------|---------|--------|
| S K T | -5,828 | -1,594 | -42,869 | -16,566 | -4,090 | -4,510 | 20,483 | -104 |
| K T | -10,489 | -16,877 | 51,370 | 10,696 | -27,453 | 11,492 | -14,335 | -4,039 |
| LGU+ | 16,317 | 18,471 | -8,501 | 5,870 | 31,543 | -6,982 | -6,148 | 4,143 |
| 순증1위 | LGU+ | LGU+ | K T | K T | LGU+ | K T | S K T | LGU+ |
| 순증3위 | K T | K T | S K T | S K T | K T | LG U + | K T | K T |

| | 10월2주 | 10월3주 | 10월4주 | 10월5주 | 11월1주 | 11월2주 | 11월3주 | 11월4주 |
|-------|--------|--------|---------|--------|--------|---------|---------|--------|
| S K T | -4,578 | 2,211 | 2,672 | -5,604 | -7,565 | 2,295 | -2,154 | -4,201 |
| K T | -4,467 | -3,018 | -17,658 | -3,059 | -4,004 | -13,290 | -15,466 | -4,456 |
| LGU+ | 9,045 | 807 | 14,986 | 8,663 | 11,569 | 10,995 | 17,620 | 8,657 |
| 순증1위 | LGU+ | S K T | LGU+ | LGU+ | LGU+ | LGU+ | LGU+ | LGU+ |
| 순증3위 | S K T | K T | K T | S K T | S K T | K T | K T | K T |

특히 번호이동 순증에서 LGU+는 1월1주~7월4주까지 30주 연속 순증, KT는 1월2주~7월3주까지 28주 연속 순감을 나타내었다.



< 이통3사 '12.1.1 ~ 11.30일 월별 상·하반기 번호이동 순증규모 비교 >

(단위 : 건)

| | 1월 | | 2월 | | 3월 | | 4월 | |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S K T | -2,224 | 11,123 | -4,375 | 5,302 | 6,590 | 11,207 | -8,850 | 24,414 |
| K T | -5,023 | -20,106 | -11,296 | -20,945 | -28,761 | -35,000 | -29,470 | -63,916 |
| LGU+ | 7,247 | 8,983 | 15,671 | 15,643 | 22,171 | 23,793 | 38,320 | 39,502 |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S K T | -5,931 | -517 | -2,543 | 5,250 | 15,755 | -1,468 | 3,633 | -51,822 |
| K T | -20,236 | -32,969 | -28,932 | -19,970 | -60,221 | -9,703 | -15,147 | 27,807 |
| LGU+ | 26,167 | 33,486 | 31,475 | 14,720 | 44,466 | 11,171 | 11,514 | 24,015 |

| | 9월 | | 10월 | | 11월 | |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S K T | -20,656 | 15,973 | -2,760 | 2,065 | -10,469 | -5,864 |
| K T | -16,757 | -2,843 | -10,474 | -22,158 | -14,332 | -22,493 |
| LGU+ | 37,413 | -13,130 | 13,234 | 20,093 | 24,801 | 28,357 |

SKT는 3월을 제외한 6월까지 월상반기(1~15일)에는 순감을 보이다가 월하반기(16~말일)에는 회복하는 양상이 반복, 이후 7~8월에는 반대 양상을 보이다가 9~10월에는 6월까지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며,

< SKT '12.1.1 ~ 11.30일 월별 상·하반기 번호이동 순증규모 비교 >

(단위 : 건)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상반기 | -2,224 | -4,375 | 6,590 | -8,850 | -5,931 | -2,543 | 15,755 | 3,633 | -20,656 | -2,760 | -10,469 |
| 하반기 | 11,123 | 5,302 | 11,207 | 24,414 | -517 | 5,250 | -1,468 | -51,822 | 15,973 | 2,065 | -5,894 |

KT는 8월 하반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순감을 기록하였으며, LGU+는 9월 하반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순증을 나타내 KT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

< KT '12.1.1 ~ 11.30일 월별 상·하반기 번호이동 순증규모 비교 >

(단위 : 건)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상반기 | -5,023 | -11,296 | -28,761 | -29,470 | -20,236 | -28,932 | -60,221 | -15,147 | -16,757 | -10,474 | -14,332 |
| 하반기 | -20,106 | -20,945 | -35,000 | -63,916 | -32,969 | -19,970 | -9,703 | 27,807 | -2,843 | -22,158 | -22,493 |

< LGU+ '12.1.1 ~ 11.30일 월별 상·하반기 번호이동 순증규모 비교 >

(단위 : 건)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상반기 | 7,247 | 15,671 | 22,171 | 38,320 | 26,167 | 31,475 | 44,466 | 11,514 | 37,413 | 13,234 | 24,801 |
| 하반기 | 8,983 | 15,643 | 23,793 | 39,502 | 33,486 | 14,720 | 11,171 | 24,015 | -13,130 | 20,093 | 28,3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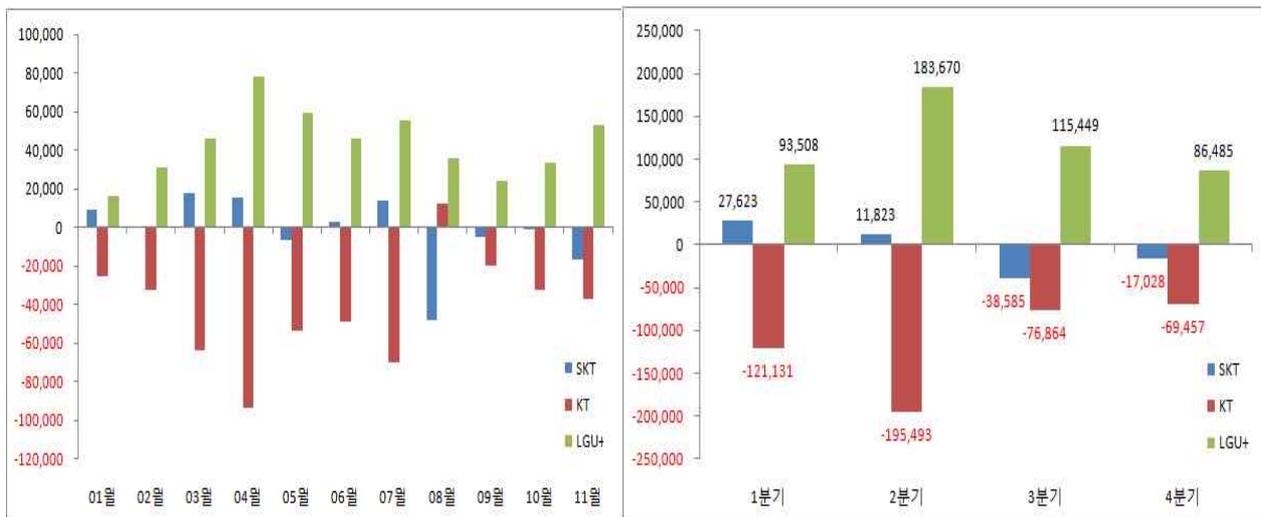
'12년도 번호이동 순증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는 LGU+(9.4만건) → SKT(2.8만건) → KT(-12.1만건)순, 2분기는 LGU+(18.4만건) → SKT(1.2만건) → KT(-19.5만건)순, 3분기는 LGU+(11.5만건) → SKT(-3.9만건) → KT(-7.7만건)순, 4분기 일부(10~11월)는 LGU+(8.6만건) → SKT(-1.7만건) → KT(-6.9만건)순으로 분기별 실적에서도 LGU+의 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 '12.1.1 ~ 11.30일 분기별 번호이동 순증규모 비교 >

(단위 : 건)

| | 1월 | 2월 | 3월 | 1분기 | 4월 | 5월 | 6월 | 2분기 |
|-------|---------|---------|---------|----------|---------|---------|---------|----------|
| S K T | 8,899 | 927 | 17,797 | 27,623 | 15,564 | -6,448 | 2,707 | 11,823 |
| K T | -25,129 | -32,241 | -63,761 | -121,131 | -93,386 | -53,205 | -48,902 | -195,493 |
| LGU+ | 16,230 | 31,314 | 45,964 | 93,508 | 77,822 | 59,653 | 46,195 | 183,670 |

| | 7월 | 8월 | 9월 | 3분기 | 10월 | 11월 | 4분기(일부) |
|-------|---------|---------|---------|---------|---------|---------|---------|
| S K T | 14,287 | -48,189 | -4,683 | -38,585 | -695 | -16,333 | -17,028 |
| K T | -69,924 | 12,660 | -19,600 | -76,864 | -32,632 | -36,825 | -69,457 |
| LGU+ | 55,637 | 35,529 | 24,283 | 115,449 | 33,327 | 53,158 | 86,485 |



[2] 마케팅비 추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시한 이통3사의 '12.1~10월까지의 월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 20%이하)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12.1~3월까지 준수하였고 4~9월까지는 준수하지 못했으나, 9월 조사 개시 이후 10월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

< '12.1~10월말 이통3사 무선분야 마케팅비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 | SKT | | | 피심인 | | | | LGU+ | | | | 합 계 | | | |
|-----------|------------|-------------|-------------|------------|-------------|-------------|----------|------------|-------------|-------------|----------|------------|-------------|-------------|----------|
| | 매출액 (A) | 마케팅비 (B) | 비율 (B/A) | 매출액 (A) | 마케팅비 (B) | 비율 (B/A) | 조정 비율 | 매출액 (A) | 마케팅비 (B) | 비율 (B/A) | 조정 비율 | 매출액 (A) | 마케팅비 (B) | 비율 (B/A) | 조정 비율 |
| 1월 | | | | - | - | 21.9% | 19.7% | | | | | | | | |
| 2월 | | | | - | - | 20.1% | 17.9% | | | | | | | | |
| 3월 | | | | - | - | 20.0% | 17.9% | | | | | | | | |
| 4월 | | | | - | - | 23.5% | 21.3% | | | | | | | | |
| 5월 | | | | - | - | 32.4% | 30.3% | | | | | | | | |
| 6월 | | | | - | - | 29.4% | 27.3% | | | | | | | | |
| 7월 | | | | - | - | 28.1% | 26.0% | | | | | | | | |
| 8월 | | | | - | - | 34.9% | 32.8% | | | | | | | | |
| 9월 | | | | - | - | 31.9% | 29.8% | | | | | | | | |
| 10월 | | | | - | - | 19.8% | 17.6% | | | | | | | | |
| 합계 | | | | 58,823 | 15,447 | 26.3% | 24.1% | | | | | | | | |

* 사업자 제출(SKT는 비율과 조정비율이 동일하며, Wibro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무선을 겸영하는 KT와 LGU+에 대해서는 '10년에는 1,000억원, '11년/'12년에는 1,500억원 범위 내에서 유·무선간 조정을 허용<유·무선간 조정금액, 125억원/월>)

(3)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변화

'12.10월말 기준 이동3사별 시장 점유율은 LGU+의 경우 '11.12월말 대비 상승(17.9%→18.8%)한 반면, SKT와 KT는 하락(SK 50.6%→50.3%, KT 31.5%→30.9%) 하였다.

월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최소 73.7만건(2월)·최대 112.1만건(8월)에 이르는 등 과열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전체 가입자수는 '11년말 대비 1.4% 성장하는데 그쳤다('11년말 52,507천명 → '12.10월말 53,352천명).

< 방통위 출범후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 변화 >

(단위 : 천명)

| 구분 | '08.12월말 | | '09.12월말 | | '10.12월말 | | '11.12월말 | | '12.10월말 | |
|------|----------|--------|----------|--------|----------|--------|----------|--------|----------|--------|
| | 가입자 | 점유율 |
| SKT | 23,032 | 50.5% | 24,270 | 50.6% | 25,705 | 50.6% | 26,553 | 50.6% | 26,825 | 50.3% |
| K T | 14,365 | 31.5% | 15,016 | 31.3% | 16,041 | 31.6% | 16,563 | 31.5% | 16,471 | 30.9% |
| LGU+ | 8,210 | 18.0% | 8,658 | 18.1% | 9,022 | 17.8% | 9,391 | 17.9% | 10,056 | 18.8% |
| 합계 | 45,607 | 100.0% | 47,944 | 100.0% | 50,768 | 100.0% | 52,507 | 100.0% | 53,352 | 100.0% |

* 사업자 제출자료(wiBro 가입자 제외)

특히, 시장 과열 경쟁의 주원인인 신규 LTE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12.11월말 기준 SKT 48.1%(6,761천명) → LGU+ 28.9% (4,060천명) → KT 23.1%(3,242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 이동 3사 LTE서비스 가입자 점유율 변화 >

(단위 : 천명)

| 구분 | '11.12월말 | | '12.1월말 | | '12.4월말 | | '12.6월말 | | '12.11월말 | |
|------|----------|-------|---------|-------|---------|-------|---------|-------|----------|-------|
| | 가입자 | 점유율 | 가입자 | 점유율 | 가입자 | 점유율 | 가입자 | 점유율 | 가입자 | 점유율 |
| SKT | 634 | 53.2% | 1,003 | 51.1% | 2,381 | 49.1% | 3,344 | 47.2% | 6,761 | 48.1% |
| K T | - | - | 112 | 5.7% | 580 | 12.0% | 1,170 | 16.5% | 3,242 | 23.1% |
| LGU+ | 557 | 46.8% | 849 | 43.2% | 1,889 | 39.0% | 2,576 | 36.3% | 4,060 | 28.9% |
| 합계 | 1,191 | 100% | 1,964 | 100% | 4,850 | 100% | 7,089 | 100% | 14,063 | 100% |

* 사업자 제출자료(KT는 '12.1월초부터 LTE서비스 개시)

라.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6,471천명으로 전체 시장의 30.87%(12.10월말 기준)를,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매출액은 67,909억원으로 30.36%를 점유(11.12월말 기준)하고 있다.

< 이동전화 시장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 피심인 | | |
|-------------------|-------------------|--|--|
| 가입자수 (점유율, %) | 16,471 (30.87) | | |
| 매 출 액 (점유율, %) | 67,909 (30.36) | |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 제출자료(2011년 영업보고서)

4. 사실조사 결과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2012년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본사 및 전국 주요권역 유통망에 대해 현장조사 하였다.

‘12.7.1 ~ 12.10 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신규·기변 가입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수납자료, 이메일 및 공지사항,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지점 포함)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별로 자체 리베이트⁷⁾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펀딩능력⁸⁾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 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이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판매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도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왔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이후에는 마케팅 비용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지역본부(지점 포함) 위주로 주말 등 특정시기에 스팟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통망에 전파하였다.

(1) 차별적 보조금 책정 (이통사 → 대리점)

피심인은 매월 본사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배포하는데, 정책 내용에는 제조사와의 Co-work⁹⁾ 정책, 이통사 단말기 판매정책, 소매판매 활성화 정책, 판매 유통 채널별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 등 유통망은 본사 영업정책을 기본으로 단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판매점에 배포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게 하였다.

| FA-5. 소매 채널 SPOT 정책 ¹⁾ (소매1+소매2) | | | | 10.6일~ | | | | | | |
|---|----|---------------------|----|--------|-------|-------|-------|---|---|---|
| 가입 유형 | | 약정/할부 기간 | | | 운영 대상 | | | KM-E100 모델 한정 핸드폰할인²⁾ 8만원 이상 설정 조건 LTE 스폰서 24개월 이상 할부 조건 | | |
| 기본 | 골드 | 12 | 18 | 24 | 010 | MNP | 전환 | | | |
| 결합 | I형 | 개월 | 개월 | 개월 | 신규 | 신규 | 기변 | ● | ● | ● |
| ● | | ● | | | ● ● ● | | | KT | | |
| 대상 모델 | | 핸드폰할인 ²⁾ | | | 010 | S-MNP | L-MNP | 기변/전환 | | |
| SHV-E250K(G) | | | | | 40 | 40 | 40 | 0 | | |
| E250K(G)_64G | | | | | 40 | 40 | 40 | 0 | | |
| SHV-E210K(W) | | | | | 90 | 90 | 90 | 90 | | |
| E210K(W)_16G | | | | | 90 | 90 | 90 | 90 | | |
| SHV-E160K(W) | | | | | 90 | 90 | 90 | 90 | | |
| E160K(W)_16G | | | | | 90 | 90 | 90 | 90 | | |
| SHV-E120K | | | | | 220 | 220 | 220 | 90 | | |

7)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이 이통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 지급하는 단말기 수수료를 의미함

8) 대리점의 자금능력으로 이통사에서 받은 관리수수료나 판매수수료, 목표 수당,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 구매시 선할인 비용 등에 의해 조성됨

9) 제조사가 단말기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피쳐폰 · 스마트폰 · LTE폰 등 기종별로 정책이 별도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사별로 지원금액이 다름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각종 영업정책을 수시로 유통망에 배포하였으며, 이동전화 시장 과열중에는 기본 영업정책 외에 비하인드·문자·구두정책 등을 메신저,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유통망에 배포하였다.

< 예시, 유통망에 배포한 각종 영업정책 및 공지사항 >

| 비하인드 정책 | | | | 문자 정책 | | | SMS 공지 |
|--------------------------------|---|-----------------------|-----------------------|-------|--|--|--------|
| 판매점함내세요 추가정책 (정책외 추가지급) | | | | | | | |
| LTE Grade 정책 1일~5일 | 7년 | 10년 | 20년 | | | | |
| 지급액 | 정책외 전당 30,000만원 추가 | 정책외 전당 50,000만원 추가 | 정책외 전당 70,000만원 추가 | | | | |
| 지급 조건 | 판매점 제정함(점점ID 기준) 해당그레이트 LTE 전화모델만 010, MNP, 가변 전당지급 중복거래시 그레이트 미지급 | | | | | | |

대리점은 지역본부(지점 포함)에서 보내준 각종 영업정책을 토대로 '단가표'를 작성하여 판매점에 배포하고,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정보습득 차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 LTE 스폰서 리베이트 10월7호(통합) 10월20일 09시 개통기준~ | | | | | | | | | | | | | | |
|---|-----------|--------------------|--------------------|------------|-------------|-------------|------------|-----------------------|--------------------|-----------------|-----------------|------------|-----------------------|--------------------|
| 모델 | 출고가 | USIM | Fair Price 할인금액 | 정가본 할인2 | MNP | | | | | 010 | | | | |
| | | | | | LTE-G750 이상 | LTE-G650 기준 | LTE 520 기준 | LTE420, 알420,플드275 | LTE340, 알340 기준 | LTE-G750 이 상 | LTE-G650 기 준 | LTE 520 기준 | LTE420, 알420,플드275 | LTE340, 알340 기준 |
| LG-F120K (옵티머스 LTE Tag) | 792,000 | LTE 유심 GE-L1670 | 2,000 | | 650,000 | 550,000 | 400,000 | 350,000 | 300,000 | 550,000 | 500,000 | 470,000 | 460,000 | 430,000 |
| IM-A830K (베가 레이서2 LTE) | 913,000 | LTE 유심 GE-L1670 | 3,000 | | 850,000 | 700,000 | 550,000 | 450,000 | 400,000 | 600,000 | 550,000 | 520,000 | 510,000 | 470,000 |
| LG-F160K (옵티머스 LTE 2) | 935,000 | LTE 유심 GE-L1670 | 5,000 | | 700,000 | 600,000 | 350,000 | 300,000 | 250,000 | 500,000 | 450,000 | 420,000 | 410,000 | 370,000 |
| SHV-E250K (갤럭시노트2 32G) | 1,089,000 | LTE 유심 GE-L1670 | 9,000 | | 200,000 | 100,000 | 40,000 | 20,000 | 0 | 120,000 | 70,000 | 40,000 | 30,000 | 0 |
| E250K_64G (갤럭시노트2 64G) | 1,155,000 | LTE 유심 GE-L1670 | 5,000 | | 200,000 | 100,000 | 40,000 | 20,000 | 0 | 120,000 | 70,000 | 40,000 | 30,000 | 0 |

(2) 차별적 보조금 지급 (이통사대리점·판매점 → 이용자)

①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113,331건(번호이동 99,629건, 일반 13,702건)¹⁰⁾과 기기변경 가입 41,921건 등 총 155,252건을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건수 >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신 규 | 22,656 | 37,436 | 26,659 | 11,704 | 10,918 | 3,958 | 113,331 |
| -번호이동 | 19,247 | 34,031 | 25,387 | 8,561 | 8,781 | 3,622 | 99,629 |
| -일반 | 3,409 | 3,405 | 1,272 | 3,143 | 2,137 | 336 | 13,702 |
| 기기변경 | 8,794 | 10,654 | 4,768 | 8,038 | 6,490 | 3,177 | 41,921 |
| 합 계 | 31,450 | 48,090 | 31,427 | 19,742 | 17,408 | 7,135 | 155,252 |

* 12월은 10일간(1~10일)의 가입건수임

단, 단말기 구매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건과 선불 요금제 가입건, 태블릿 PC 및 무선인터넷 모뎀 가입건 그리고 실버폰 개통건¹¹⁾ 및 2G 서비스 가입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사대상 분석 단말기는 총 44개 기종이었다.

② 시기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가입자 한명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289천원으로 9월에는 가장 많은 38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10월에는 135천원이 지급되어 조사¹²⁾ 이후 대폭 하락하였다.

10)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11) 실버폰 및 2G 서비스에 가입한 피쳐폰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12) 사실조사 착수일 : '12.9.13(목)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월별) >

(단위 : 원)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전체평균 |
|-----|---------|---------|----------------|----------------|---------|---------|----------------|
| 출고가 | 812,068 | 872,299 | 940,571 | 881,377 | 872,700 | 919,537 | 877,288 |
| 보조금 | 221,106 | 374,737 | 382,742 | 135,012 | 213,296 | 217,081 | 289,405 |
| 보조율 | 27.2% | 43.0% | 40.7% | 15.3% | 24.4% | 23.6% | 33.0% |

※ 월별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월평균 금액이며, 12월은 10일간(1~10일)의 가입건수임

또한 주간 단위로 보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던 9월중에서도 주별로 보조금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9월 4주의 보조금이 143천원인 반면, 9월 2주는 보조금이 445천원으로 주간별로도 차별이 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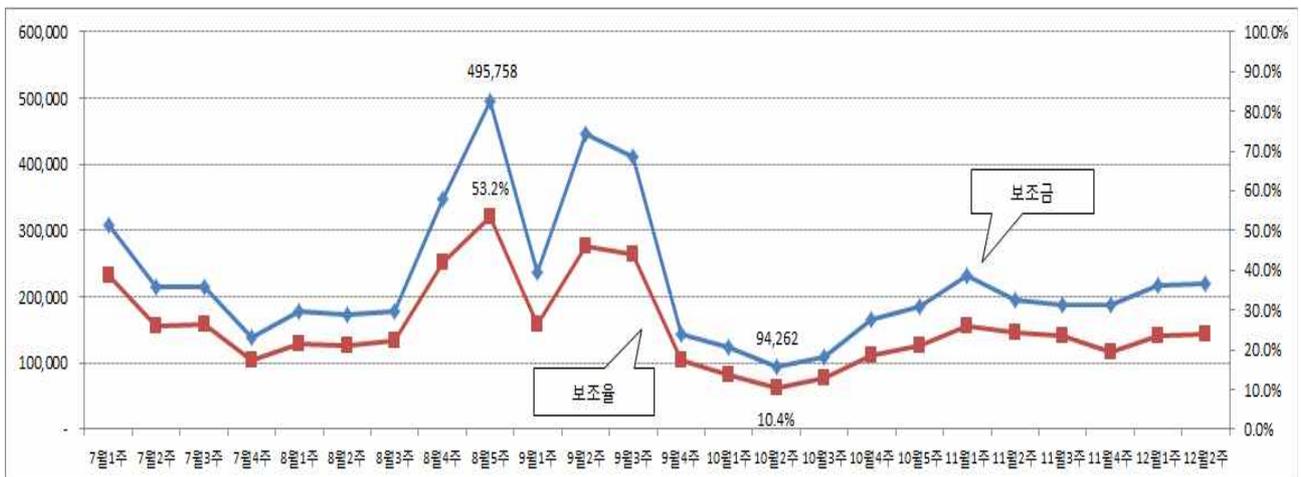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주별) >

(단위 : 원)

| 구 분 | 7월1주 | 7월2주 | 7월3주 | 7월4주 | 8월1주 | 8월2주 | 8월3주 | 8월4주 | 8월5주 | 9월1주 | 9월2주 | 9월3주 |
|-----|---------|---------|---------|---------|---------|---------|---------|---------|---------|---------|---------|---------|
| 출고가 | 797,719 | 820,182 | 806,728 | 788,712 | 833,550 | 822,083 | 797,722 | 834,560 | 931,566 | 907,622 | 965,293 | 933,122 |
| 보조금 | 307,742 | 213,778 | 213,752 | 138,435 | 177,899 | 171,899 | 177,443 | 348,773 | 495,758 | 237,732 | 445,481 | 412,218 |
| 보조율 | 38.6% | 26.1% | 26.5% | 17.6% | 21.3% | 20.9% | 22.2% | 41.8% | 53.2% | 26.2% | 46.1% | 44.2% |

| 구 분 | 9월4주 | 10월1주 | 10월2주 | 10월3주 | 10월4주 | 10월5주 | 11월1주 | 11월2주 | 11월3주 | 11월4주 | 12월1주 | 12월2주 |
|-----|---------|---------|---------|---------|---------|---------|---------|---------|---------|---------|---------|---------|
| 출고가 | 816,235 | 890,449 | 909,140 | 846,544 | 891,863 | 886,383 | 894,010 | 799,828 | 806,341 | 962,902 | 920,520 | 917,914 |
| 보조금 | 142,977 | 122,672 | 94,262 | 110,254 | 166,711 | 185,699 | 233,260 | 195,580 | 188,707 | 188,063 | 216,094 | 218,709 |
| 보조율 | 17.5% | 13.8% | 10.4% | 13.0% | 18.7% | 21.0% | 26.1% | 24.5% | 23.4% | 19.5% | 23.5% | 23.8% |

※ 주별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주평균 금액임



③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피심인이 이용자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형태는 크게 신규 가입과 기기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규 가입의 경우 세부적으로 신규 일반(010)과 번호이동(MNP)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29천원인 반면, 기기 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182천원으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 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이가 147천원이었다. 이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적은 반면,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용자 간 가입형태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354천원 지원한 반면 신규 일반 가입자는 149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이는 7월부터 시장 과열이 최고조였던 9월까지 상승하다가 조사 착수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원)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전체 평균 |
|----------|---------|---------|---------|---------|---------|---------|---------|
| 신규 보조금 | 247,847 | 420,681 | 417,349 | 132,703 | 210,918 | 239,780 | 329,080 |
| -번호이동 | 266,549 | 447,803 | 430,260 | 141,051 | 211,604 | 248,156 | 353,882 |
| -일반(010) | 142,257 | 149,612 | 159,667 | 109,964 | 208,100 | 149,490 | 148,740 |
| 기기변경보조금 | 152,212 | 213,300 | 189,245 | 138,374 | 217,297 | 188,801 | 182,145 |
| 보조금차이 | 95,635 | 207,381 | 228,104 | 5,672 | 6,378 | 50,979 | 146,935 |

* 12월은 10일간(1~10일)의 가입건수임



※ 월별 보조금 금액은 월평균 금액임

참고로 피심인의 전체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기간인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신규 가입자의 비중이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차이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피심인의 전체 가입자 추이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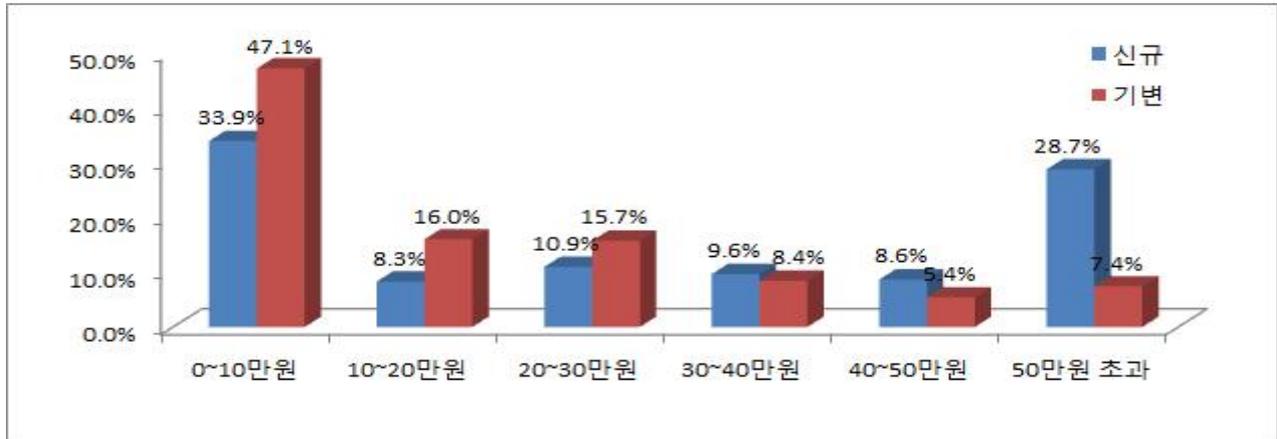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신규 가입자 | 474,361 | 531,363 | 483,573 | 299,240 | 357,590 | 131,719 | 2,277,846 |
| (비중) | (68.5%) | (70.5%) | (74.8%) | (59.5%) | (60.5%) | (52.4%) | (66.3%) |
| 기기변경가입자 | 218,209 | 221,966 | 162,493 | 204,086 | 233,479 | 119,589 | 1,159,822 |
| (비중) | (31.5%) | (29.5%) | (25.2%) | (40.5%) | (39.5%) | (47.6%) | (33.7%) |
| 합 계 | 692,570 | 753,329 | 646,066 | 503,326 | 591,069 | 251,308 | 3,437,668 |

※ 사업자 제출자료이며, 12월은 10일간(1~10일)의 가입건수임

보조금 지급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신규 가입자는 30만원 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46.9%를 차지하는 반면, 기기 변경 가입자는 20만원 이하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가 63.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 구 분 | 10만원 이하 | 10~20만원 | 20~30만원 | 30~40만원 | 40~50만원 | 50만원 초과 |
|---------------|-----------------|----------------|-----------------|----------------|---------------|-----------------|
| 신규 (점유율) | 38,378 33.9% | 9,363 8.3% | 12,371 10.9% | 10,902 9.6% | 9,782 8.6% | 32,535 28.7% |
| 기기변경 (점유율) | 19,733 47.1% | 6,691 16.0% | 6,583 15.7% | 3,560 8.4% | 2,261 5.4% | 3,093 7.4% |



④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0대에서 60대까지는 보조금 수준이 272 ~ 315천원 수준으로 연령대별 차별이 전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70대 이상 가입자의 경우 보조금 수준이 190천원으로, 주된 요인은 정보습득 부족과 최신 스마트폰이나 LTE폰의 다양화로 인한 복잡성 때문에 유통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원)

| 구분 | 10대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
| 출고가 | 717,539 | 864,646 | 906,495 | 887,946 | 891,503 | 850,890 | 793,528 | 851,874 |
| 보조금 | 304,964 | 278,408 | 282,535 | 314,684 | 271,530 | 307,436 | 308,359 | 190,326 |
| 보조율 | 42.5% | 32.2% | 31.2% | 35.4% | 30.5% | 36.1% | 38.9% | 22.3% |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⑤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LTE 단말기 기종¹³⁾에 대한 보조금은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도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며, 같은 날짜에도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폭이 매우 크게 변동하여 동일기종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2년 7월 출시한 갤럭시 S3의 경우 7월 평균 보조금은 66천원이었으나, 시장 과열중이던 9월에는 평균 420천원을 지급하여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었다. 나머지 4개 기종들도 월별 구입시기에 따라 보조금 차별이 명확하게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단말기 기종별 월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원)

| 모델명 | 팻네임 | 출고가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SHV-E210S | 갤럭시S III | 994,400 | 66,154 | 273,666 | 419,747 | 73,952 | 188,263 | 218,886 |
| SHV-E160S | 갤럭시 노트 | 933,900 | 180,023 | 263,451 | 261,064 | 93,286 | 218,901 | 286,089 |
| SHV-E120S | 갤럭시S II HD | 899,800 | 258,413 | 109,965 | 368,731 | 171,732 | 243,612 | 340,899 |
| IM-A840S | 베가레이서2 | 913,000 | 454,857 | 544,394 | 411,994 | 251,675 | 309,154 | 423,143 |
| LG-F100S | 옵티머스 LTE2 | 935,000 | 315,528 | 655,652 | 485,527 | 200,635 | 342,753 | 262,414 |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월별 평균 금액이며, 12월은 10일간(1~10일)의 가입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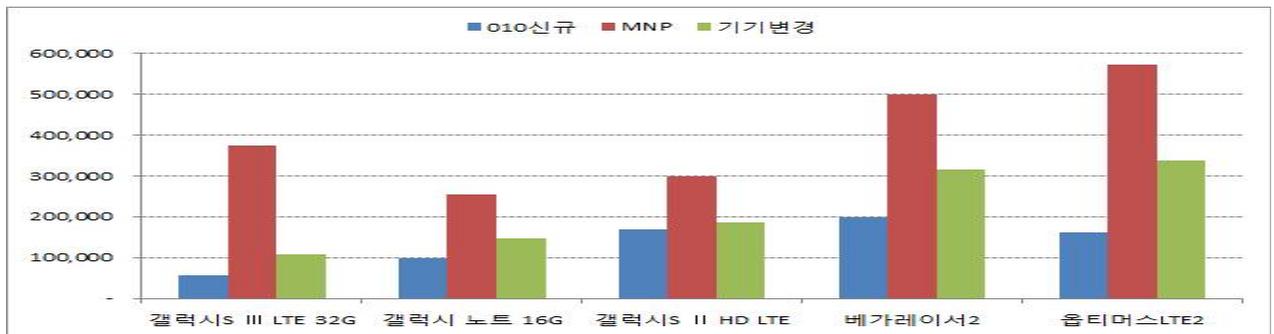
13) 이통3사의 주요 LTE 기종 중 판매량 상위 단말기를 제조사별(삼성계열 3종, LG계열 1종, SKY계열 1종)로 포함하여 분석함

또한, 갤럭시 S3 LTE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보면,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374천원으로 신규(010) 가입자의 58천원보다 316천원을 더 지원했다. 나머지 4개 단말기도 동일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원은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원)

| 모델명 | 펫네임 | 출고가 | 신규 | | 기기변경 |
|-----------|------------|---------|---------|---------|---------|
| | | | 010신규 | MNP | |
| SHV-E210S | 갤럭시SIII | 994,400 | 58,336 | 374,305 | 108,626 |
| SHV-E160S | 갤럭시노트 | 933,900 | 98,865 | 256,213 | 148,074 |
| SHV-E120S | 갤럭시S II HD | 899,800 | 168,598 | 298,829 | 186,907 |
| IM-A840S | 베가레이서2 | 913,000 | 199,761 | 499,345 | 316,054 |
| LG-F100S | 옵티머스LTE2 | 935,000 | 162,016 | 573,161 | 337,483 |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도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특히 갤럭시 S3의 경우 최대 1,194천원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원)

| 모델명 | 펫네임 | 출고가 | 보조금 | | | |
|-----------|------------|---------|---------|-------|-----------|-------|
| | | | 평균 | 보조율 | 최대 | 최소 |
| SHV-E210S | 갤럭시SIII | 994,400 | 312,542 | 31.4% | 1,194,400 | 0 |
| SHV-E160S | 갤럭시노트 | 933,900 | 225,191 | 24.1% | 1,265,900 | 3,900 |
| SHV-E120S | 갤럭시S II HD | 899,800 | 263,878 | 29.3% | 1,294,140 | 9,800 |
| IM-A840S | 베가레이서2 | 913,000 | 456,802 | 50.0% | 1,033,280 | 3,000 |
| LG-F100S | 옵티머스LTE2 | 935,000 | 538,900 | 57.6% | 1,229,600 | 5,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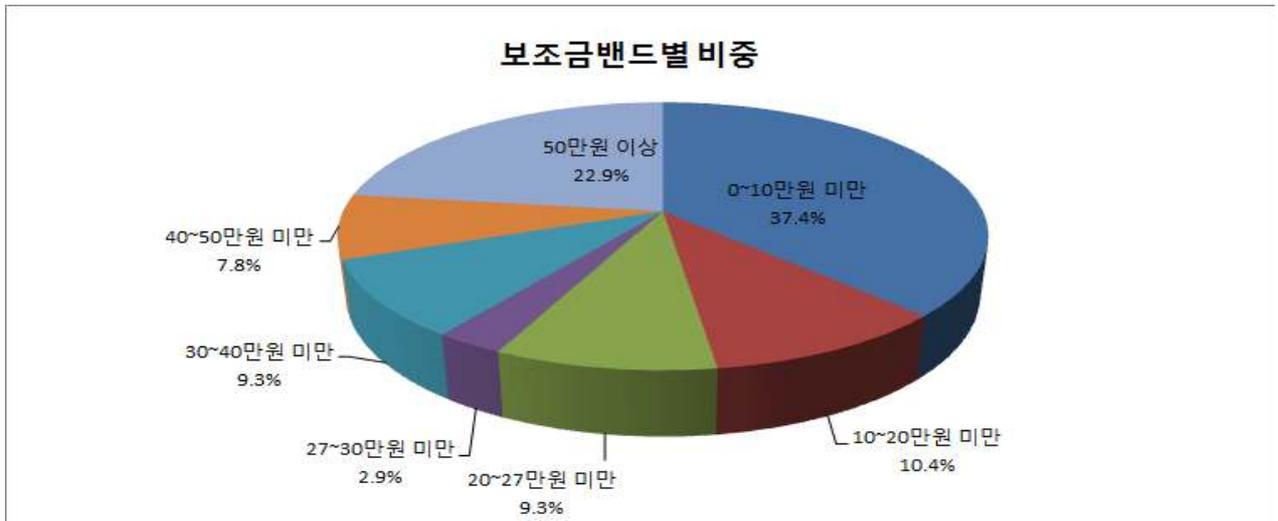
⑥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40.0%인데 반해 1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37.4%로 가입자 간 양극화가 뚜렷하여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 구 분 | 10만원 이하 | 10~20만원 | 20~27만원 | 27~30만원 | 30~40만원 | 40~50만원 | 50만원 초과 | 합계 |
|-----|---------|---------|---------|---------|---------|---------|---------|---------|
| 가입자 | 58,111 | 16,054 | 14,411 | 4,543 | 14,462 | 12,043 | 35,628 | 155,252 |
| 비 중 | 37.4% | 10.4% | 9.3% | 2.9% | 9.3% | 7.8% | 22.9% | 100.0% |



⑦ 온라인에서의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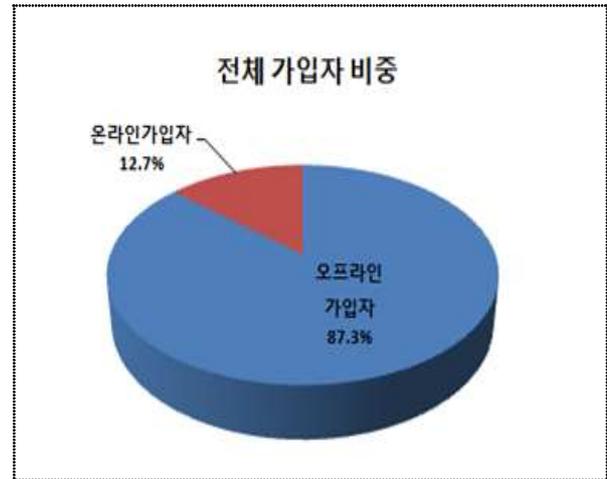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은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뿐만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특히 갤럭시 S3 LTE 단말기가 17만원에 판매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¹⁴⁾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량의 경우 피심인 전체 판매량¹⁵⁾의 약 12.7% 정도¹⁶⁾의 비중이지만 국민의 약 78%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습득¹⁷⁾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된 휴대폰 구입고객인 20대~5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온라인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온라인 가입자 비중 >

| 구 분 | 가입자 수 | 비중 |
|-------------|-----------|--------|
| 온라인가입자(명) | 343,438 | 12.7% |
| 오프라인 가입자(명) | 2,361,234 | 87.3% |
| 전체 가입자(명) | 2,704,672 | 100.0% |

※ 사업자 제출자료(2012.7.1.~11.5)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월평균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기간 중 온라인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대비 약 1.6~2.2배의 보조금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별로 보면 최대 263천원(7월)에서 최소 157천원(11월)까지 더 지급받고 있어 온·오프라인 간 보조금 차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4) 온라인 부분에 대한 분석은 2012.7.1.~11.5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유통망 자료도 동 기간을 분석

15)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량의 합산이며, 오프라인의 경우 이통사 직영, 도·소매 대리점,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16) KT의 온라인 판매비중은 공식 온라인 지정 대리점의 판매량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포털이나 공동카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일명 ‘딜러’들에 의한 판매량은 파악하기 어려움.

- 딜러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후 오프라인 유통망(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개통처리하고 있어 그 모집규모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움
- 온라인 가입시 이통사의 공식 지정 대리점과 일명 ‘딜러’라는 판매자의 구분방법은 온라인 개통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가 이통사 공식 신청서로 작성할 수 있는지 유무에 따라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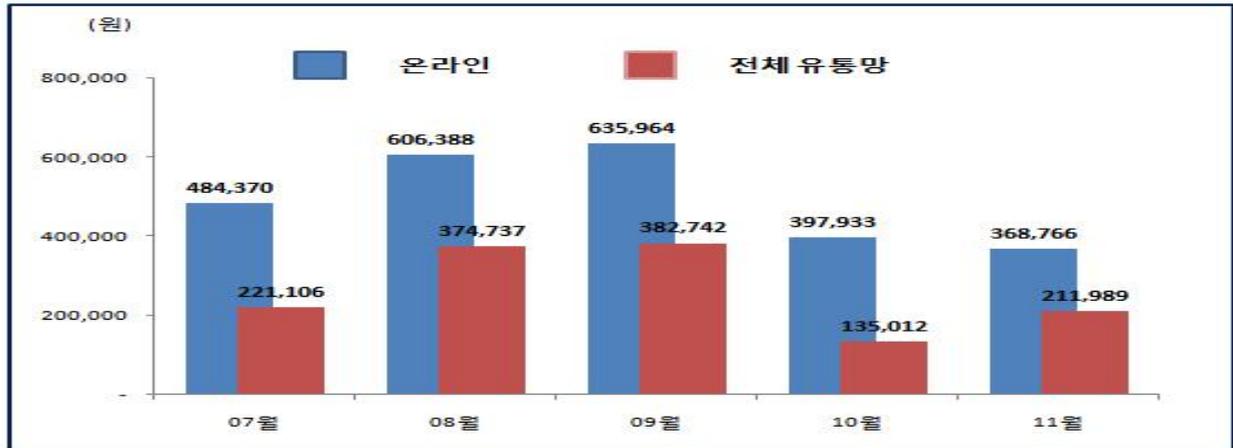
17)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7월 만3세 이상 인구의 78.0%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중 휴대폰 단말기의 주된 구입고객인 20대~50대의 인터넷이용 비율이 약 70.0%를 차지하고 있음

- 10대 이하 7.8%, 10대 17.4%, 20대 17.9%, 30대 21.4%, 40대 19.9%, 50대 10.9%, 60대 3.9%, 70대 0.8%

〈 전체 유통망 대비 온라인 보조금 비교 〉

(단위 : 명)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온라인 보조금 (a) | 484,370 | 606,388 | 635,964 | 397,933 | 368,766 |
| 전체 유통망보조금(b) | 221,106 | 374,737 | 382,742 | 135,012 | 211,989 |
| 보조금차이(c=a-b) | 263,264 | 231,651 | 253,222 | 262,921 | 156,777 |
| 보조금지급비율(d=a/b) | 2.2배 | 1.6배 | 1.7배 | 2.9배 | 1.7배 |



※ 전체 유통망 보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입자가 포함된 자료이며 월평균 금액임

또한 온라인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10대~20대의 판매량 비중이 약 50.3%로 전체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었으며, 단말기 보조금도 약 600천원 정도의 높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따라서 전체 가입자의 경우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이 심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는 연령대별 차별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온라인 가입자의 보조금 수준 및 판매량 비중 〉

(단위 : 원)

| 구 분 | 10대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
| 온라인 보조금 (판매량 비율) | 511,409 (7.1%) | 608,580 (24.8%) | 591,954 (25.5%) | 499,191 (18.0%) | 535,526 (15.0%) | 528,920 (4.4%) | 498,900 (1.5%) | 514,842 (3.7%) |
| 전체 유통망 보조금 (판매량 비율) | 307,776 (1.4%) | 286,306 (13.9%) | 294,463 (21.2%) | 326,387 (25.0%) | 277,876 (19.1%) | 316,974 (12.3%) | 318,877 (4.1%) | 192,311 (3.0%) |

※ 온라인 가입자는 사업자 제출 자료이며, 전체 유통망 가입자 자료는 조사 분석대상 자료임

온라인 가입자의 보조금 지원금액을 보면 약 70.0%가 4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가입자와의 차별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온라인 가입자의 보조금 밴드별 비중 〉

(단위 : 원)

| 구 분 | 10만원 이하 | 10~20만원 | 20~27만원 | 27~30만원 | 30~40만원 | 40~50만원 | 50만원 초과 |
|------------|-------------------|------------------|------------------|------------------|------------------|-------------------|--------------------|
| 온라인 가입자 | 12,022 (3.5%) | 24,242 (7.1%) | 26,342 (7.7%) | 11,485 (3.3%) | 29,155 (8.5%) | 36,652 (10.7%) | 203,540 (59.3%) |
| 전체 유통망 가입자 | 51,485 (37.4%) | 12,703 (9.2%) | 11,989 (8.7%) | 3,940 (2.9%) | 12,755 (9.3%) | 10,653 (7.7%) | 33,959 (24.7%) |



※ 온라인 가입자는 사업자 제출 자료이며, 전체 유통망 가입자 자료는 조사 분석대상 자료임

나.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¹⁸⁾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¹⁹⁾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²⁰⁾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2) 위법성 판단

① 27만원 초과 위반율

피심인은 전체 조사대상 155,252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66,676건으로 위반율은 42.9%였으며, 평균 보조금은 289천원이었다.

18)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19)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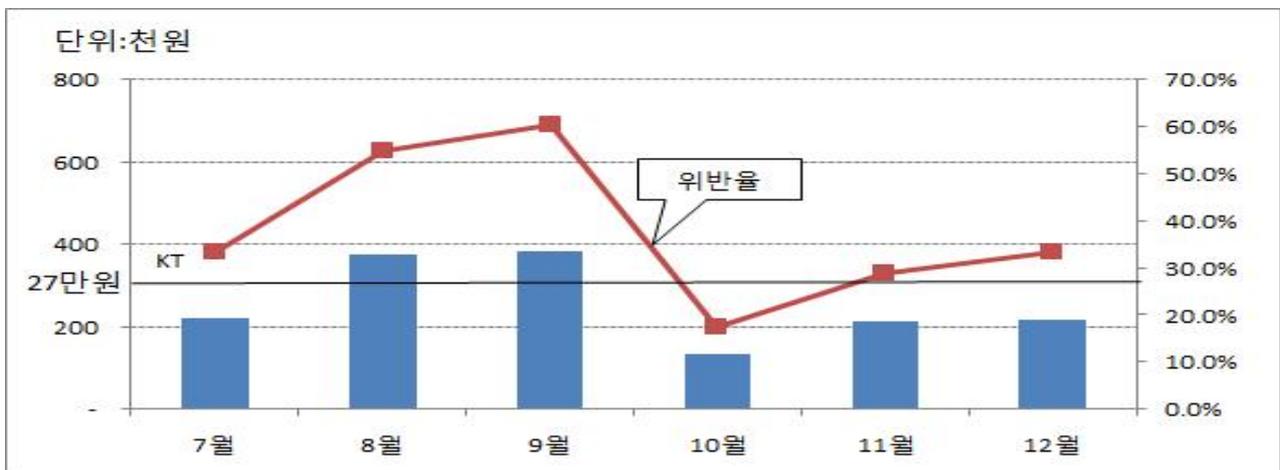
20)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피심인의 위반율을 월별로 보면, 이동전화 시장이 과열 중이던 9월이 60.3%로 가장 높았으며, 위반율이 가장 낮은 달은 10월로 위반율은 17.4%이었다.

〈 월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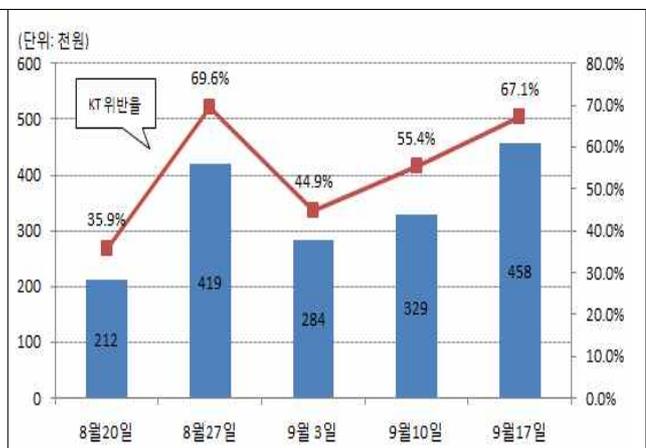
| 구분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1~10일) | | 전체 | |
|----|--------|------|--------|------|--------|------|--------|------|--------|------|------------|------|--------|------|
| | 평균 보조금 | 위반율 | 평균 보조금 | 위반율 | 평균 보조금 | 위반율 |
| KT | 221 | 33.4 | 375 | 54.9 | 383 | 60.3 | 135 | 17.4 | 213 | 28.8 | 217 | 33.4 | 289 | 42.9 |



특히 사실조사 전 1개월 동안(8.20~9.17)의 매주 첫째 날 위반율을 보면 피심인은 평균 54.6%의 위반율을 나타냈으며, 8월20일(최저) 35.9%에서 8월27일(최고) 69.6%까지의 높은 위반율을 나타냈다.

〈 주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8.20 ~ 9.17) 〉

| 구분 | 피심인 | |
|-----------|------------|--------|
| | 평균 보조금(천원) | 위반율(%) |
| 8월 20일(월) | 212 | 35.9% |
| 8월 27일(월) | 419 | 69.6% |
| 9월 03일(월) | 284 | 44.9% |
| 9월 10일(월) | 329 | 55.4% |
| 9월 17일(월) | 458 | 67.1% |



② 사실조사 전·후 위반율

피심인은 사실 조사 이전 50.9%의 다소 높은 위반율을 보였으나, 조사 이후 위반율이 25.1%로 대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조사 전·후 위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조사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전·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 구 분 | 조사 개시전(7.1~9.17) | | 조사 개시후(9.18~12.10) | |
|-----|------------------|-------|--------------------|-------|
| | 평균 보조금 | 위반율 | 평균 보조금 | 위반율 |
| 피심인 | 337 | 50.9% | 184 | 25.1% |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전산장애 발생기간(9.10~17일)을 감안 9.18일을 기준으로 분석

③ 가입형태별 위반율

신규(010) 가입의 위반율은 20.4%, 번호이동 위반율은 53.7%, 기기변경 위반율은 24.7%로 가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컸으며, 특히 번호이동에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입형태별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294천원에서 최소 0원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 평균 출고가 | 보조금 수준 | | | 위반율 | |
|-----|---------|---------|-------|-------|-------|-------|
| | | 평균 | 최대 | 최소 | | |
| 전 체 | 877,288 | 289 | 1,294 | 0 | 42.9% | |
| 피심인 | 010신규 | 787,074 | 149 | 1,294 | 33 | 20.4% |
| | 번호이동 | 901,506 | 354 | 1,213 | 0 | 53.7% |
| | 기기변경 | 849,218 | 182 | 1,033 | 41 | 24.7% |

④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25.1%~47.1%의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보조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전체 |
|--------|-------|-------|-------|-------|-------|-------|-------|-------|
| 평균 보조금 | 278 | 283 | 315 | 272 | 307 | 308 | 190 | 289 |
| 위 반 율 | 45.2% | 38.6% | 45.1% | 42.7% | 47.1% | 44.5% | 25.1% | 42.9% |

⑤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같은 기종별로도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중 주요 LTE단말기의 위반율은 갤럭시S3 48.4%, 베가레이서2 66.3%, 옵티머스 태그 53.3%로 같은 단말기에 따라서도 보조금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 출고가 | 평균 보조금 | 조사건수 | 위반건수 | 위반율 |
|-------------------|-----|--------|--------|--------|-------|
| 갤럭시S3 LTE (삼성) | 994 | 313 | 37,917 | 18,335 | 48.4% |
| 베가레이서2 LTE (팬택) | 913 | 457 | 12,113 | 8,025 | 66.3% |
| 옵티머스 LTE Tag (엘지) | 792 | 286 | 1,837 | 979 | 53.3% |

⑥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중 위반건수 66,676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²¹⁾은 30~40만원대가 전체의 21.7%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거의 출고가 수준(공짜)인 90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비율도 5.7%나 나타났다.

21)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 구 분 | 27~30 만원 | 30~40 만원 | 40~50 만원 | 50~60 만원 | 60~70 만원 | 70~80 만원 | 80~90 만원 | 90~100 만원 | 100만원 초과 | 합 계 |
|----------|-------------|--------------|-------------|-------------|-------------|-------------|-------------|--------------|-------------|--------|
| 위반 건수 | 4,543 | 14,462 | 12,043 | 8,755 | 5,892 | 6,241 | 10,942 | 3,605 | 193 | 66,676 |
| 분포율 | 6.8% | 21.7% | 18.1% | 13.1% | 8.8% | 9.4% | 16.4% | 5.4% | 0.3% | 100% |

⑦ 온라인에서의 보조금 위반율

피심인이 제출한 온라인 가입자 343,43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상에서의 평균 보조금은 558천원이고 위반율은 81.8%로 나타났다. 이는 위법성 판단기준 27만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단말기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월별로 보면, 9월에 평균 보조금이 636천원으로 87.4%의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가장 적은 보조금을 지급한 11월에도 평균 보조금이 369천원, 위반율이 76.5%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 온라인상의 월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건,원)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합계 |
|--------|---------|---------|---------|---------|---------|---------|
| 분석 건수 | 54,530 | 114,798 | 111,761 | 54,988 | 7,361 | 343,438 |
| 평균 보조금 | 484,370 | 606,388 | 635,964 | 397,933 | 368,766 | 558,170 |
| 위 반 율 | 73.5% | 88.8% | 87.4% | 64.6% | 76.5% | 81.8% |

※ 사업자 제출자료(7.1 ~ 11.5일까지의 자료)

라.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의견

피심인은 '12.10월말 시장 점유율이 31.5%에서 30.9%로 하락하고, 번호 이동 순증이 46만3천건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주길 바라며, 향후 시장 안정화에 적극 참여하여 과도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정 조치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11.9월 의결 당시에 차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 시 3회 위반에 해당하여 3개월 이내의 신규 모집 금지를 미리 경고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5.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i)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ii) 이통3사 유통망에서 가입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납, 단말기 할인,페이백 등을 전산에 정확히 기재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iii) 전산에 입력된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관련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시 수시 제출하고, (iv) 관련 전산자료 검증 시 허위 입력 등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직원 및 유통망을 제재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v) 신규모집 금지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vi) 온라인상에서의 불·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제재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신규모집 금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0호에 의거, 2013.2.22~3.13(20일) 기간 동안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 업무 정지는 가입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재판매 등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MVNO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제외),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을 포함한다.

7.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한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과징금 부과 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6] 1호 나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687억3천만원이다.

< ② 기준 과징금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부과기준율은 '11년 9월 단말기 보조금 시정조치건과 비교하여 위반율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피심인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에게 적용한 부과기준율의 평균인 0.35%를 적용한다.

<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 범위 >

(단위 : 억원)

| 사업자 | 관련 매출액 | 기준 과징금 | | |
|-----|--------|-------------------------|--------------------|-----------------------|
| | | 중대성 약함 (부과기준율 1% 이내) | 중대 (부과기준율 1~2%) | 매우 중대 (부과기준율 2~3%) |
| KT | 8,310 | 83.1 이하 | 83.1 ~ 166.2 | 166.2 ~ 249.3 |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29억1천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기준 과징금에 대해 영업 행태, 조사협조 여부 및 시정명령 이행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피심인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별점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8%를 가중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온라인 불법 마케팅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기준 과징금에서 2%를 감경한 28억 5천만원으로 결정한다.

8.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 12. 24.

| | | |
|---------------|-------|-----------|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위 원 장 | 이 계 철 (인) |
| | 부위원장 | 김 충 식 (인) |
| | 위 원 | 홍 성 규 (인) |
| | 위 원 | 김 대 희 (인) |
| | 위 원 | 양 문 석 (인) |